

중국 시진핑 시대의 세계개편에 관한 회고와 전망*

유호림**

〈요 약〉

중국의 세계개혁은 언제나 ‘정책제시 → 시범시행 → 전국확대’라는 절차적 특성과 더불어 약 10여 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초기였던 1980년대의 ‘이개세(利改稅)’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시기였던 2000년대의 ‘영개증(營改增)’개혁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내세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공동부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강력한 분배 기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진핑 집권 3기 이후의 세계개혁 또한 최소 10여 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세계개혁은 크게 ① 소득분배 강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②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삼농 관련 조세 감면 ③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 등으로 구분되며 무엇보다도 최근 중국의 과세당국이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하여 지대추구자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과거에는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조세우대를 부여하였지만 최근에는 생산적 투자가 아닌 지대추구적 투자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비록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개발 등 지대추구적 투자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농촌과 농민·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경제주체와 소득계층에 대하여 감세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바,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중국의 ‘불균형·불충분 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및 그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혹은 이념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중국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

* 본 논문은 2022학년도 강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 liuhulin@naver.com

으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 및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때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개관에 기초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후, 시진핑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그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세제개편의 주요내용 및 그 정책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주제어〉 중국, 시진핑, 사회주의, 감세정책, 세제개혁

I. 서 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은 마르크스-레닌 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운영을 위한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은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조세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분석한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제시한 국정 철학에 따라 조세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예컨대 중국 건국 초기의 중국 중앙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가변적 모순론’으로 해석하여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론’을 주창하였고, 이에 따라 서구와는 다른 방식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방식과 그에 필요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마오쩌둥으로부터 공산당의 권력을 승계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가변적 모순론’에 기초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론’을 수용하면서도 다시 한 번 당시의 낙후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라는 생산력의 발전(즉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개혁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덩샤오핑에 이어 순차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였던 장쩌민(삼개대표론)이나 후진타오(조화로운 사회) 및 시진핑(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또한 각각 ‘가변적 모순론’에 입각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각 집권자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수정에 따라 중국의 국정 철학과 거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최초로 제기하였는바, 이는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¹⁾ 시진핑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지난 40여 년

1) <http://baidu.com> 中央网新聞 2018.5.4.

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하, ‘구(舊)모순 관계’)’은 해결하였으나, 21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모순 관계가 ‘인민의 아름답고 좋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공평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하, ‘신(新)모순 관계’)’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이러한 ‘신(新)모순 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면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신시대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이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이른바 ‘공동부유’의 실현에 관하여 ① 2035년까지 기본적 공공서비스(필수재)의 평등을 실현하고, ② 2050년까지는 공동번영을 기본적으로 달성하며, ③ 주민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격차를 합리적인 범위 축소하는 것을 단계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²⁾ 따라서 시진핑 집권 3기에는 신시대의 정책목표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소득분배 강화 ② 자산배분 조정 ③ 자본팽창 억제 ④ 교육평등 실현 ⑤ 도농간 균형 발전 등 시장화된 ‘자본의 재공유화’를 위한 개혁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개관에 기초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후, 시진핑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그 정책 목표인 ‘공동부유’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 세제개편의 주요내용 및 그 정책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I 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논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제 II 장에서는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하여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이른바 시진핑 집권 제3기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세제개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을 전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IV 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 및 정리한 후 우리 정부 및 대중국 투자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2) 習近平, 2021b. “扎實推動共同富裕.” 『求是網』(2021.10.17.). 이 글에서 시진핑은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하여 ① 혁신을 장려하고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확대하며 ② 공유경제를 주체로 하되 혼합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③ 합리적 분배정책을 추진하되 ‘복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④ ‘공동부유’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⑤ 균형과 조정을 통한 개발을 시행하되 포용성을 개선하고 중산층의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⑥ 기본 공공재의 평등을 추구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강화하며, ⑦ 인민 정신생활의 공동번영 및 농민과 농촌의 공동번영을 강조하였다.
- 3)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미 ① 사교육(인적자본)이 금지, ② 아리바바와 텐센트(데이터자본) 등 독점 IT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③ 부동산개발기업(토지자본)에 대한 규제 확대, ④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한 중산층과 농민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노동자본) 등 ‘공동부유’를 위한 거시정책과 조세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II.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개관

1.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론적 개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이하, ‘마르크스’라 함)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여 역사의 발전과정을 생산력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하여 ‘정(正)과 반(反)’의 관계인 생산수단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력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바, 역사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 계급이 일시적으로 상부구조를 형성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본가와의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면서 ‘합(合)’의 단계인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⁴⁾ 요컨대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과정을 ‘생산수단과 생산관계의 변화 → 생산력의 극대화 → 자본가계급의 등장 →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 프롤레타리아 독재 → 사회주의국가로의 진보’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 당시 중국은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동유럽의 제국(諸國)과는 다소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즉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의 중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생산력이 고도로 증대되는 역사적 발전단계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유럽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론’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마오쩌둥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론’은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도시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봉건체제하에서 지주계급에 예속되어 있는 농민계급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기초하는데, 마오쩌둥은 서구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간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보았으며 당시 중국 내에 잔존해 있던 봉건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은 ‘기타 모순’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마오쩌둥은 ‘가변론’의 관점에서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을 재해석하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하는 ‘모순 관계’에 맞추어 사회주의 이론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달리 말해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 관계’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던 동유럽 사회의 ‘모순 관계’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서구사회와는 상이한 중국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주의 모순 관계(즉, ‘(正)과 반(反)’의 관계)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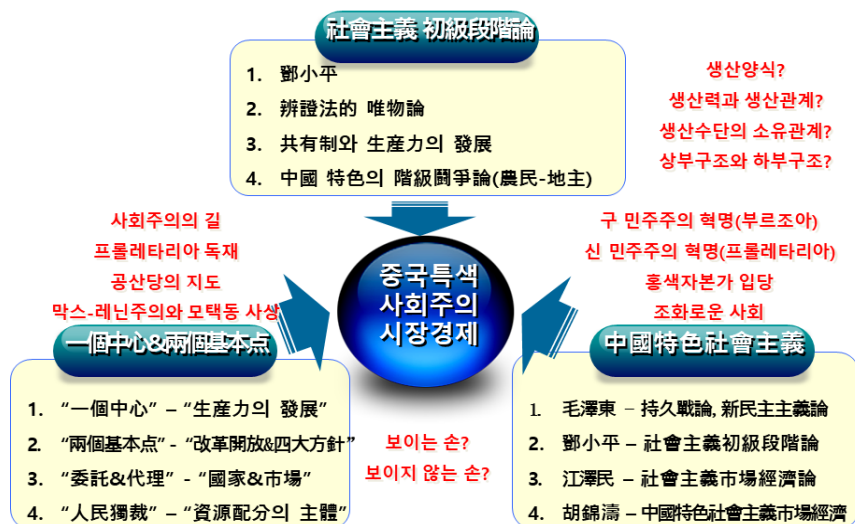
4) 樣瑞龍, 陳秀山, 張宇. 1998. 『社會注意經濟理論』. 中國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4~p.14.

5) 國家教委社科司組編. 1998. 『中國革命史』. 中國北京: 高等教育出版社. p.173~p.178.

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1987년 짜오즈양(趙紫陽)에 의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이론이 마오쩌둥의 ‘모순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은 마오쩌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도 중국 공산당은 1927년 난창시에서의 1

한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긍정하면서도 마오쩌둥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하였던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오류로 인하여, 중국은 여전히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즉, 초급단계의 사회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고 한다.⁷⁾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중국의 경우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로 진보하지 못한 초급단계의 사회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덩샤오핑은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정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중국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정(正)→반(反)→합(合)’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은 단지 ‘정(正)과 반(反)’이 혼재해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개념 체계



* 출처 : 저자 직접 작성

덩샤오핑은 이와 같은 당시 중국 사회에 대한 재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의 근간인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공유제에 기초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차봉기와 광저우에서의 2차봉기 등 2차례의 도시봉기에서 실패한 후, 마오쩌둥의 주장에 따라 농촌지역인 징강산으로 거점을 옮긴 후 농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되었다.

- 7) 鄧小平. 1995. 『鄧小平文選』第三卷. 中國北京 : 人民出版社, p.117, p.373. 덩샤오핑은 당시의 중국 상황을 역사발전에 필수 요소인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로 진보하지 못한 채 낮은 단계(즉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장경제이론'이라 한다. 요컨대 덩샤오핑은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역사발전의 동력인 '생산력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즉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되,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잉여생산물을 인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즉 '공동부유')'를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⁹⁾

이와 같은 덩샤오핑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은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이식된 '생산력 증대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역설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경제적 자원(즉 잉여자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⁰⁾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3단계 발전론과 조세제도

덩샤오핑은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혁개방'을 채택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은 '어떠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고립되거나 폐쇄되어서는 아니되며 국제교류를 강화하지 아니하고 선진국가의 과학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개혁보다 개방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바,¹¹⁾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점(點) → 선(線) → 면(面)'의 3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른바 '점(點) → 선(線) → 면(面)'의 3단계 발전전략'이란 ① 우선 동부연안의 1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혁개방의 시작점(點)으로 삼고, ② 이후 14개 경제특구의 개혁·개방 상황 및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이들 경제특구를 선(線)으로 연결한 후, ③ 최종적으로 중국 중서부 및 내륙지역까지 개혁·개방을 전면적(面)으로 확대하려는 경제발전전략을 의미한다.¹²⁾ 이와 더불어 덩샤오핑은 또한 '온포(溫飽社會) → 소강(小康社

8) 樣瑞龍등. 앞의책. p.26~p.31 ;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252.

9)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142, p.364 ; 주장환, 2018,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p.192.

10) 중국 공산당의 장정(章程 ; 우리나라의 '당헌'을 의미)에는 당의 기본노선으로 '일개중심(一個中心), 양개기본점(兩個基本點)'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개중심(一個中心)'은 '생산력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양개기본점(兩個基本點)'은 '개혁개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공산당의 지도 · 마르크스-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공산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의미는 후술한다.

11)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117.

12) 樣瑞龍등. 앞의책. p.25~p.26 ; 鄧小平. 앞의책. p.226.

會)→대동(大同社會)’에 이르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하, ‘삼보주(三歩走) 전략’)도 제시하였다. ‘삼보주(三歩走) 전략’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050년까지 약 70년을 관통하는 중국의 초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덩샤오핑이 1987년 스페인 부수상과의 회견에서 중국의 발전(즉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후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채택되기 전까지 중국 정부에서 거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여 왔다.¹³⁾

이와 같은 덩샤오핑의 ‘삼보주(三歩走)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포사회(溫飽社會)’란 ‘개혁개방’을 통해 1980년대 당시 250\$ 수준이었던 중국의 1인당 GDP를 1990년대까지 약 4배 수준인 1000\$로 제고하여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삼보주(三歩走)전략’의 1단계가 완성된 사회를 의미하며,¹⁴⁾ ‘소강사회(小康社會)’는 ‘온포사회(溫飽社會)’의 실현 이후 다시 약 30년~50년 정도가 지난 2020년 전후에는 1990년대 1인당 GDP인 1000\$의 4배인 약 4000\$을 달성하여 모든 인민이 일정 수준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삼보주(三歩走) 전략’의 2단계가 완성된 사회를 가리킨다.¹⁵⁾ 마지막 단계의 목표인 ‘대동사회(大同社會)’는 ‘온포(溫飽)’와 ‘소강(小康)’이라는 목표가 모두 실현되어 모든 인민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의미하는바, 이는 곧 덩샤오핑이 제시한 ‘삼보주(三歩走) 전략’의 완성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의 미래상으로 이해된다.¹⁶⁾(<그림 2> 참조)

<그림 2>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삼보주(三歩走)” 전략과 조세정책

共産黨 政策目標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 실현!!				조세정책목표
大同社會 (~2050) (2015년 7,847\$)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경제와 사회의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계층과 지역의 인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대동사회건설				□ 복지국가구현
小康社會 (~2020) GDP 4000\$ (2015년 4,423\$)	자주혁신	구조조정	내륙개발	내수촉진	내수&분배
	양 → 질, 성장 → 분배, 수출 → 내수, 동부 → 내륙으로 성장전략전환				□ 소득분배
	중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공평과 분배”를 경제성장전략으로 제시				□ 내수촉진
	“소강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과학발전관”에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 구현				□ 민영기업
					□ 내륙투자
溫飽社會 (~2000) GDP 1000\$ (2000년 932\$)	시장경제도입	국유기업개혁	동부연안개방	외자기업우대	투자&수출
	點 → 線 → 面 의 3단계 경제발전모델제시				□ 수출&성장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一個中心&兩個核心點)				□ 투자&개발
	“온포”실현을 위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社會主義初級階段論)				□ 외자&동부
					□ 국유기업

* 출처 : 저자 직접 작성

13)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226.

14) 鄧小平. 1995. 『鄧小平文選』 第一版; 第二卷. 中國北京: 人民出版社. p.356.

15)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57.

16) 鄧小平(第三卷). 앞의책. p.117, p.252, p.373; 胡鞍鋼. 2007. 『中國崛起之路』. 中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372~p.375.

한편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일개중심(一個中心)과 양개기본점(兩個基本點)’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일개중심(一個中心)’이란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경제성장)을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개기본점(兩個基本點)’은 개혁개방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공산당의 지도 · 마르크스-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가리킨다. 이를 풀어보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생산력의 발전(경제성장)’을 근본적인 목적에 두어야 하지만(一個中心),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회주의의 길(사회주의 시장경제)을 포기해서는 아니되며,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당 독재)를 실천하되, ③ 공산당의 지도하에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공산당 계급혁명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뜻(兩個基本點)으로 정리된다.¹⁷⁾

이와 같은 덩샤오핑의 국가발전전략과 원칙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이론의 기본 원칙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중국 정부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시장의 잉여자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국에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수요-공급)’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이는 손(재정-금융)’으로 작동하여 시장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두 긍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면 중국에서의 조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출한 공유이익의 배분수단’으로 정의되는바, 중국 정부가 조세를 이용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출된 공유이익이나 잉여자원을 주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된다. 이처럼 중국의 조세제도는 중국 정부에서 시장의 공유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되기 때문에 공유이익 분배의 주체인 국가의 거시정책이나 전략 방침에 따라 종속적으로 개편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¹⁸⁾

요컨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공유이익의 분배 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개입과 인위적 자원배분이 정당화되며, 조세제도는 공유이익 분배의 주체인 국가가 공유이익이나 잉여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도구(수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국의 세제개혁은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이라는 중국 중앙 공산당과 중앙 정부의 거시정책과 그에 기초한 장기전략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4년에는 당시 중국 중앙 공산당의 총서기인 장쩌민이 내세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17) ‘일개중심(一個中心)과 양개기본점(兩個基本點)’은 1987년 중국 중공중앙 제13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개념으로서, 2012년 중국 중공중앙 제18차 전국대표자대회의 결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의 장정(章程)에 당의 기본노선으로 정식 채택된 중국 공산당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견지한다는 구절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이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혁명도 불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며, 제일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자산계급의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구절의 함의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출처 : <http://dangshi.people.com.cn/n/2012/1119/c234123-19618241.html>).

18) Yoo Ho Lim & Yoon Sung Man. 2015. “Trends and Prospects of Tax Reforms in China”, *Risk governance & control : financial markets & institutions* / Volume 5, Issue 1, 2015.

로의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세계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역시 당시 중국 중앙 공산당의 총서기였던 후진타오가 제시한 국정이념인 ‘과학발전관’과 이에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추진하였던 ‘구조적 감세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⁹⁾

3.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기의 세계개혁 회고

가. 개혁개방 초기의 주요 세계개편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조세제도는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여 중복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세수가 유실되는 등 폐단이 발생하였다.²⁰⁾ 특히 당시 중국에서 시행하던 각 세목의 법정세율은 비교적 높았지만 유효세율은 매우 낮아서 재정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세수분배 및 징수권한이 불명확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하였다.²¹⁾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중국 중앙 공산당은 1992년 제14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필요한 현대적 기업제도 확립, ② 도시와 농촌 및 국내와 국외 시장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③ 정부의 경제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시경제 조절체계의 확립, ④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평한 분배제도를 수립하여 공

19) 과학발전관이란 합리적 사고와 정책추진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서 후진타오의 집권과 함께 중국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과학발전관의 핵심 내용은 크게 지속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 인간중심의 발전(以人爲本), 균형발전(均衡發展) 등으로 요약되는데, 그중에서도 인민의 이익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삼아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전면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인위본(以人爲本)’이 그 핵심이념이다. 즉, 과거 중국의 정치사상이 경제적 성장을 위한 방법론이었다면 후진타오가 제시한 과학발전관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해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학발전관은 도시와 농촌 및 계층간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이라는 후진타오의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상덕, 2008. “중국의 새 발전전략, “科學發展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26~p.51.).

20) 예컨대 당시 중국은 개인의 소득과세에 있어서 개인소득세·개인수입조절세·성시개체공상호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목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나, 과세체계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각 세목의 규정 또한 상이하거나 미비되어 있어서 중복과세와 조세포탈이 만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1) 예를 들어 당시 국유기업에 대한 법정세율은 55%였지만 승포제로 인해 그 실질 조세부담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특히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우대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심각하였다. 예컨대 당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외상투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3%이나 각종 조세우대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 조세부담수준은 약 11%~1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劉虎林(2007), 「中國合併納稅制度與上市公司所得稅負擔研究」, 中國經濟科學出版社.).

동부유의 길 창조, 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주민에게 모두 사회보장의 혜택 부여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993년부터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²⁾

당시의 세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정부는 1993년 당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소비세제를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증치세와 소비세 및 영업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²³⁾ 증치세제는 과세대상의 종류와 거래단계에 따라 각각 상이하던 세율구조를 단일세율로 전환하고 납세의무자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소비세제는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소득격차와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치성 재화에 대하여 고세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하였으며, 영업세제의 경우 증치세 과세대상 가공 및 수리수선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공급 및 무형자산의 양도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만 영업세를 과세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²⁴⁾

한편 당시의 공상세제(工商稅制)는 증치세와 소비세 및 영업세가 시행되면서 그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집시교역세·목축교역세·연료특별세·급여조절세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연료특별세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축재세와 연석세는 지방세로 전환하였다. 이밖에 염세를 자원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자원세잠행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과도한 지대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토지증치세잠행조례’를 새로이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림특산품농업세·상품세·공상통일세 중의 농림목수산물세는 모두 농업특산세로 통합하여 세제와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고 농민의 조세부담도 경감하였다.²⁵⁾

이밖에 기업소득세제의 경우 ‘국영기업소득세잠행조례(초안)’·‘집체기업소득세잠행조례’·‘사영기업소득세잠행조례’ 등 기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던 기업 관련 과세

22) https://baike.baidu.com/item/%E7%AC%AC%E5%85%AB%E4%B8%AA%E4%BA%94%E5%B9%B4%E8%AE%A1%E5%88%92/4037686?structureClickId=4037686&structureId=7e4db7414add634e5cd90c79&structureItemId=9ecbf4e3b57ee9d59fc0e1b9&lemmaFrom=starMapContent_star&fromModule=starMap_content&lemmaIdFrom=643153

23) 즉 과거 외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상통일세로 과세하고 내자기업에 대하여는 상품세·증치세·연초세·영업세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던 기존의 소비세제를 증치세·소비세·영업세로 간소화하여 통합하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4) 이는 1993년 12월 29일 개최되었던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25) 참고로 1990년대 중국의 세수관리 규정은 행정법규인 ‘세수징수관리잠행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2년 ‘세수징수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동법에서는 조세징수의 기본절차 등에 관하여 총칙·세무관리·세액징수·세무조사·법률책임·부칙의 6장으로 세분하고 과세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업소득세합행조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법적 형식과 무관하에 모두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기업소득세제를 재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향개체공상호소득세합행조례’와 ‘개인수입조절세합행조례’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규정 또한 모두 폐지하고 ‘개인소득세법’으로 단일화하였다.

이처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선포와 함께 추진되었던 1993년의 세제개혁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의 폐단과 문화대혁명의 폐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중국 경제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⁶⁾

나. 21세기 초의 주요 세제개편

한편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였던 20세기의 경제정책과 조세제도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간·계층간·도농간’의 소득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조세우대는 오히려 내자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장쩌민에 이어 권력을 승계한 후진타오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른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이라는 국정이념과 ‘5가지 종합계획(五个統籌)’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다.²⁷⁾ 후진타오는 구체적으로 ① 과거 수출주도 성장전략 및 외자기업 유치정책에서 내수주도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② 환경과 사회복지정책 강화, ③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주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주된 방침으로 확정하였다.

중국 중앙 정부는 이러한 후진타오의 국정이념에 따라 ‘구조적 감세정책’을 목표로 단계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구조적 감세정책’은 ‘저소득자와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세하되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증세하여 전체적인 세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²⁸⁾ 요컨대 후진타오 정부는 감세

26) 유호림. 2007. “중국 신(新)기업소득세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조세연구, 제7집. p.447~p.457.

27)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은 후진타오 집권 이후 최초로 제시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2006~2010)으로서,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간의 성과와 반성에 기초하여 경제와 사회의 과학적인 발전 전략을 가리키며, ‘5가지 종합계획’이란 과도한 성장과 맹목적인 효율을 지양하여 중국의 사회와 경제가 과학적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동부와 중서부·경제와 사회·인간과 자연·국내발전과 대외개방’등 핵심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 반드시 중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진타오의 국정이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각주(19)를 참고하기 바란다.

28) 花磊. 2013. 理性看待我國當前宏觀稅負水平及結構性減稅. 財政稅收(2013年第5期). p.63, 馬衍偉. 2013. 結構性減稅政策的理論分析和政策探討. 中國財政(2013年第3期). p.22, 朱青. 2012. 對我國稅負問題的思考. 財貿經濟(2012年第12期). p.9, 叢明. 2012. 關於實施結構性減稅政策若干問題的分析. 創新(2012年第1期). p.7, 閔坤&于樹一. 2011. 論全球金融危機下的中國結構性減稅. 稅務研究(2011年第1期). p.13 등에서 정의하였다.

로 인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수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과 산업에 대하여만 감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적 감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⁹⁾ 후진타오 시기의 ‘구조적 감세정책’은 ① 생산형 증치세의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 및 증치세와 영업세의 통합과 소비세제의 과세점 인상, ② 개인소득세의 과세점 인상과 세율구간의 조정, ③ 내자기업소득세법과 외자기업소득세법의 통합 및 국제세원관리 강화 등에 대하여 진행되었는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증치세 부담 경감을 위한 증치세 등 소비세제 개혁은 2017년에 이르러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된다.³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당시 중국은 자본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생산형 증치세였기 때문에 소비형 증치세를 운용하고 있는 주변국에 비해 조세부담이 무거울 뿐 아니라 경제주체의 자본투자에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동북지역의 3개성과 2007년 중부지역의 6개성을 시작으로 생산형 증치세의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이하, ‘영개증 개혁’이라 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³¹⁾ 예컨대 2012년부터는 상해시에서도 ‘영개증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2013년 7월부터는 북경시와 중부지역 6개성을 포함하여 11개의 성시(省市)로까지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적용대상 업종도 교통운수업과 일부 인적용역을 추가하였다.

2009년에는 또한 소규모납세자의 판정 기준금액을 100만 위안(공업기업) 또는 108만 위안(상업기업)에서 각각 50만 위안 또는 80만 위안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증치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적용세율도 6%(공업기업) 또는 4%(상업기업)에서 모두 3%로 인하하였다.³²⁾ 이와 같은 소비세제에 대한 ‘구조적 감세정책’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2011년 11월에는 기존의 증치세 과세기준 금액(매 월 2000위안~5000위안(재화공급), 1500위안~3000위안(용역공급), 매 회(일) 150위안~200위안)을 각각 매월 5000위안~20000위안(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300위안~500위안(매 회(일) 기준)으로 인상하였으며,³³⁾ 매 월 영업액 1000

29) 朱青(2012), 앞의 논문. p.6. 참고로 朱青은 ‘구조적 감세’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감세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만일 ‘구조적 감세’가 아닌 ‘전면적 감세’를 추진하는 경우 일본이나 그리스 등처럼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조적 감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세제개혁은 ‘簡稅制, 寬稅基, 底稅律, 嚴徵管’의 4대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른바 ① ‘簡稅制’는 세율구조의 간소화 및 조세우대의 감소와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하며 ② ‘寬稅基’는 조세의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세원을 간결히 하는 것을 가리키고, ③ ‘底稅律’은 명목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④ ‘嚴徵管’은 징수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가리킨다.

30) 유호림(2007)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을 통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소 연 1400억 위안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고 한다.

31) <全國實施增值稅轉型改革若干問題的通知>(財稅[2008] 170号)

32)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國務院令第538号)

33)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實施細則的決定>(財政部令第65号)

위안~5000위안(매 회(일) 영업액 10위안)이었던 영업세 과세기준 가액 또한 매 월 영업액 5000 위안~20000위안(매 회(일) 기준 300위안~500위안)으로 인상하는 등 증치세와 영업세 납세의 무자의 조세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³⁴⁾ 특히 2013년 8월부터는 ‘영개증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 하면서 월 영업액 20000위안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영업세를 완전히 면제하였다.³⁵⁾

한편 중국 정부는 같은 시기에 개인소득자에 대한 ‘구조적 감세정책’도 병행하였는데, 2005년에는 중국 인민들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소득 12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한 반면,³⁶⁾ 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월 800위안이던 근로소득세의 과세점을 1600위안으로 2배 인상한 이후 2007년과 2011년에도 각각 2000위안과 35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³⁷⁾ 또한 2011년에는 기존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7단계로 조정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적용세율은 인상하였으나, 저소득자의 최저세율은 3%로 인하하여 서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하였다.³⁸⁾ 이밖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손금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소득 관련 조세부담수준을 일정 수준 인하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사회보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빈곤계층인 농민에 대하여는 중국 역사 최초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여 조세부담을 완전히 면제하였다.³⁹⁾

중국 정부는 또한 2008년 내자기업소득세와 외자기업소득세를 통합하면서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손금범위와 적용세율을 외자기업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내자기업의 조세부담도 일정 수준 경감하였다.⁴⁰⁾ 그러나 외자기

34) <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實施細則的決定>(財政部令第65号)

35) <關於金融支持小微企業發展的實施意見>, 國務院辦公廳, 2013.08.13. 동 정책문건에서는 ‘十二五計劃’ 기간 내에 모든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영개증 개혁’이후 중국 영업세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의 발전과 내수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당시 중국의 영업세는 과세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세용역의 공급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며, 교통운수업과 건축설비업 등의 경우 증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매입한 후 영업세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도 역시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무겁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른바 ‘영개증 개혁’ 이후에는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36) <關於印發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的通知>(國稅發[2005]205号)

37)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的決定>(國務院令第452号)

38)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的決定>(主席令第85号)

39) <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中發[2006]1号.). 유호림(2007)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농업세 폐지를 통해 농민의 조세부담이 매년 600억 위안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고 한다.

40)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主席令第63号). 유호림(2007)에 따르면 내자기업의 경우 통합 기업소

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법에 이전가격세제와 저자본세제 등 국제조세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는바,⁴¹⁾ 특히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전가격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하였다.⁴²⁾ 이후 2009년에는 중국의 영세기업과 창업기업을 보조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만 위안 이하인 소형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의 50%를 감액하거나 감면세율(2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법정기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및 농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였다.⁴³⁾⁴⁴⁾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기술혁신 및 서비스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국 20개 도시에 설립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육훈련비 관련 손금범위를 확대하는 등 후진타오의 집권 시기에는 주로 중소기업과 농촌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도 크게 확대되었다.⁴⁵⁾

4. 소결

덩샤오핑은 중국에서 ‘높은 수준(고급단계)의 사회주의(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공유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식하여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한 잉여생산물을 중국의 모든 인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이론으로 ‘공유제에 기초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시장’은 고급단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이론 체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조세’는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서 시장에 개입하여 공유경제에서 생성된 잉여생산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의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국에서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자유경쟁기제’가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과 공유제 및 위탁(국가)–대리(시장) 이론에 기초한 일종의 이익분배기제’로 보아야 하는바, 중국에서의 조세는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의 운용을 수탁

특세의 시행으로 당시 33%였던 세율이 25%로 인하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보다 훨씬 폭넓게 손금산입 범위가 인정되어 과거에 비해 최소 연 500억 위안 수준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1)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國務院令512号)

42) <關於印發特別納稅調整實施辦法(試行)的通知>(國稅發[2009]2号), 유호림(2007), 앞의 논문. p.447~p.457.

43) <國務院關於進一步促進中小企業發展的若干意見>(國發[2009]36号)

44) <中國清潔發展機制基金及清潔發展機制項目實施企業有關企業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財稅[2009]30号)

45) <關於技術先進型服務企業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財稅[2009] 63号)

받은 시장에서 형성된 잉여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로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합법적 공유권자’이자 ‘공유이익 분배의 위탁자’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시장이 그 권한을 일탈한다면 국가는 당연히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탁자인 시장의 이익보다 위탁자인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며, 공유권자인 국가는 대리인이자 수탁자인 시장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크게 개혁개방 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는 다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 및 발전 시기’와 최근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정부는 맹목적이고 급진적으로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으나,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오류로 인하여 시장이 파괴되면서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제도 또한 맹목적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면서, ‘변쇄철학’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주의 조세 비세론’ 및 ‘사회주의 조세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사실상 조세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시기에는 중국의 계획경제체제가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제로 변모하였으며, 변쇄철학으로 비판받았던 조세제도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잉여자본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이개세(利改稅)’개혁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 조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동 시기에는 조세제도가 시장의 효율과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여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사회주의 생산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시기에는 ‘도농간·계층간·지역간 불공평(이하, 3대 불공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이는 결국 1993년의 세계개혁을 통해 확립되었던 당시의 조세제도가 시장의 잉여자본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구조적 감세정책’을 통하여 ‘3대 불공평’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인민의 가처분 소득을 침식하고 있었던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영개증(營改增)’ 개혁)을 통해 영업세의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인민의 소득 향상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과세점을 인상하고 통합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불공평한 과세규정을 개선하는 등 세계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III.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최근의 세계개혁

1.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개관

중국 중앙 공산당은 2018년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⁴⁶⁾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여 년 간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된 사회 생산 간의 모순’을 해결하였으나, 40여년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 이러한 모순 관계가 ‘인민의 아름답고 좋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공평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新) 모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기초한다. 마오쩌둥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은 헤겔의 논리와는 다소 상이한 노자와 순자의 모순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⁴⁷⁾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순관계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모순이 주요 모순 관계이고 아직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의 중국은 서구와 상이한 봉건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을 기타의 모순 관계라고 주장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특정 시기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모순’으로 나타난다는 ‘불변적 모순론(이하, ‘불변론’이라 함)’과 동일한 사회주의 초급단계 시기라고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모순’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변적 모순론(이하, ‘가변론’이라 함)’으로 구분된다. 시진핑은 ‘가변론’의 관점에서 최근 중국 사회의 ‘모순’을 재해석하였는데 이는 곧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순’에 맞추어 사회주의 이론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⁴⁹⁾

즉 시진핑은 가변적 ‘모순론’에 근거하여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40여 년 간의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특히 시진핑은 ‘신

46) <http://baidu.com> 中央网新聞 2018.5.4.

47) 이택후, 1999, 『중국사상사론(하)』, 안휘문예출판사. p.997.

48) 毛澤東(第1卷), 1991, p.320, 毛澤東(第2卷), 1991, p.675. 마오쩌둥은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신민주주의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와 공산혁명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5.4운동 이전 중국에는 무산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민주혁명 지도자들은 소자산계급이나 지식인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소자산계급이 무산계급 혁명에 참여하면서 무산계급과 농민,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이 연합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49) 주장환(2018), 앞의 논문. p.180.~p.186.

50) 이는 곧 기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핵심 요소인 ‘동일 역사 단계—동일 사회 주요 모순론’에 수정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며 2050년에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분야의 종합발전'과 '소강사회(小康社會)와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실현하고, 이를 위하여 '개혁·법치·부패 방지'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시진핑이 주도하는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 통치이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⁵¹⁾

전술한 '사회주의 강국'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서, 이는 곧 중국이 2050년 경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완성하고 '사회주의 고급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 뜻으로 해석된다.⁵²⁾ 따라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생산력의 발전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 시기의 종결이 임박하였으므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사회주의 고급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주의 고급단계'란 '사회주의 초급단계'시기에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도입하였던 혼합경제체제(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사실상 공유주의 경제체제(1단계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가 완성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 고급단계'는 이미 발전한 생산력에 부합하고 사회성이 강화된 생산관계의 변화를 필수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데,⁵³⁾ 시진핑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2021년 중국은 이미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이 실현되었으며 향후의 시기에는 신시대에 부합하는 '공동부유 사회(이하, 공동부유론)'를 건설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⁵⁴⁾

을 가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시진핑은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모순'에 대한 재해석과 수정을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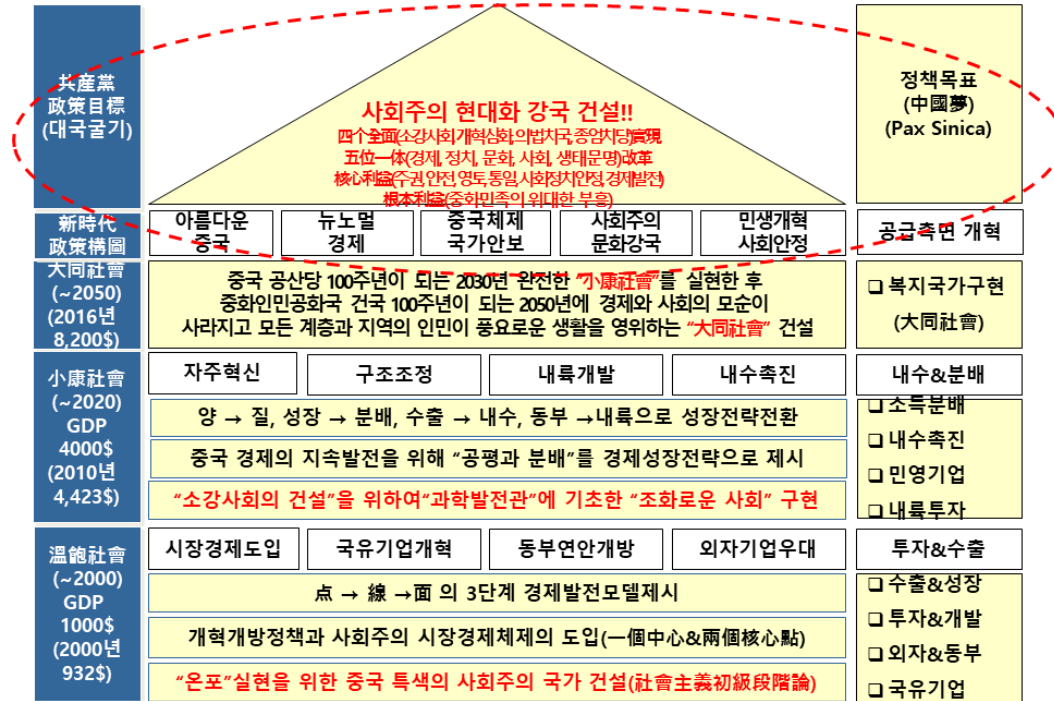
51) <http://www.wxyjs.org.cn> 2017 何毅亭, 『實現中國夢是新時代中國共產黨人的歷史使命』

52)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이론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① 1956년~1977년 :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초기, ② 1978년~2020년 :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기, ③ 2020년~2049년 :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완결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에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른바 '시진핑 사상'에서의 '新時代(새로운 시대)'는 결국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완결되는 시기라고 해석하고 있다(餘一竹, 2017).

53) 주장환(2018), 앞의 논문. p.192.

54) 한편 시진핑은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19기 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의 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제3차 역사결의'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한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라는 전략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림 3〉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개념 체계



* 출처 : 저자 직접 작성

2. ‘공동부유’의 함의

시진핑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여 양질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공동부유’를 두 번째 백년(중국 건국 100주년, 즉 2049년)까지의 장기적 국가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 요컨대 중국은 2021년이라는 첫 번째 백년에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였으므로 향후 30 여 년 은 ‘사회주의 고급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부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공동부유’는 신시대의 새로운 모순인 ‘불공평과 불충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공동부유’의 실현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안정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고용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⁵⁶⁾ 특히 시진핑이 제19차 전당대회 보고에서 현재 중국의 주요 ‘모순 관

55) 習近平. 2021a. “共同富裕是社會主義的本質要求,是中國式現代化的重要特征.” 『求是網』(2021.9.5)

56) 習近平, 2021b. “扎實推動共同富裕.” 『求是網』(2021.10.17.). 한편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 창건 당시부터 정치적 강령으로 내세웠던 개념으로 1953년 12월 12일 ‘인민일보’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덩샤오핑

계'를 '인민의 물질 및 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에서 '불균형 및 불충분한 발전과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해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요 증대'로 재해석하여 '공동부유'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시진핑은 이른바 '공동부유'의 실현을 '두 번째 백년'까지의 기간을 관통하는 주요 정책 방향이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시진핑은 2021년 '공동부유의 실현'에 관하여 ① 2035년까지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한 진전이 명확해지도록 기본적 공공서비스(필수재)의 평등을 실현하고, ② 205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동번영을 달성하며, ③ 주민 소득과 실질 소비 수준의 격차를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① 혁신을 장려하고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확대하고 ② 공유경제를 주체로 하되 혼합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③ 합리적 분배정책을 추진하되 '복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④ '공동부유'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⑤ 균형과 조정을 통한 개발을 시행하되 포용성을 개선하고 중산층의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⑥ 기본 공공재의 평등 추구 및 고소득자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강화하고, ⑦ 인민 정신생활 및 농민과 농촌의 공동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⁷⁾

따라서 시진핑 집권 3기에는 '공동부유'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① 소득분배 강화 ② 자산배분 조정 ③ 자본팽창의 억제 ④ 교육평등 실현 ⑤ 도농간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세제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미 ① 사교육이 전면 철폐되었으며 ② 아리바바와 텐센트 등 독점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③ 지대추구 기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었으며 ④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산층과 농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동부유'라는 전략 목표에 맞추어 관련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시진핑 집권 이후의 세제개편

가. 중산층과 서민 관련 세제개편

전술한 것처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인민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상 과세기준 소득금액과 인적공제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왔다. 예컨대 시진핑 집권 3기 직전이었던 2018년 10월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의 과세기준 소득금액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하였으며,⁵⁸⁾ 같은 해 12월에는 자녀공제

오팅도 '공동부유'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로 보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하였다(孫蘭 2021).

57) 習近平(2021b). 앞의 논문.

58) <關於修改個人所得稅法的決定>(十三屆全國人大常委會第五次會議, 2018.08.31.) 동 개인소득세법 개정

(매월 1인 1000위안) · 교육비공제(학위교육기간 중 매월 400위안) · 의료비공제(15000위안 초과 시 80000위안) ·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240개월 한도로 매월 1000위안) · 주택임차료공제(실제 지출한 임차료 기준 매월 1500위안) · 부모공제(60세 이상 부모 매월 2000위안) 등을 신설하여 개인소득자의 조세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하였다.⁵⁹⁾

특히 중국 정부는 시진핑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22년부터 인구감소와 인민의 가처분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개인소득자들에게 매월 1000위안을 소득공제하도록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⁶⁰⁾ 2023년에는 영아 보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금액을 2000위안으로 상향하면서 자녀공제 및 부모공제 기준금액도 각각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자녀공제) 2000위안에서 3000위안(부모공제)으로 인상하였다.⁶¹⁾ 이밖에도 중산층과 서민(이하, 중산층 등이라 함)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타의 세제개편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거주자인 개인이 지방정부로부터 수취하는 주택임차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였으며,⁶²⁾ 2024년 1월부터는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주거용 주택을 재매입하는 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⁶³⁾ 당해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200만 위안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⁶⁴⁾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 등의 간접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단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면적인 전환 및 증치세 과세점 인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이미 2012년 1월 상해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는 증치세의 과세점을 월 매출액 기준 30000위안으로 인상하여 연 매출액 36만 위안 이하인 납세의무자의 증치세와 영업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였

에서는 근로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등 4개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여, 과거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유형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59) <關於印發個人所得稅專項附加扣除暫行辦法的通知>(國發[2018]41号)

60) <關於優化生育政策促進人口長期均衡發展的決定>, <關於設立3歲以下嬰幼兒照護個人所得稅專項附加扣除的通知>(國發[2022]8号)

61) <關於提高個人所得稅有關專項附加扣除標準的通知>(國發[2023]13号. 한편, 외아들이나 외돌딸을 양육하는 개인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아들 등을 양육하는 경우 매월 3000위안을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의 월 평균 소득이 5000위안 이하인 개인소득자가 약 94.8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 내외의 고소득자 이외의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62) <關於公共租賃住房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1号)

63) <關於延續實施支持居民換購住房有關個人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住房城鄉建設部公告[2023]28号)

64) <關於進一步支持小微企業和個體工商戶發展有關稅費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2号)

고,⁶⁵⁾ 이후 2016년 5월부터는 모든 영업세 과세대상을 증치세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면전환은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 과세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⁶⁶⁾

또한 2019년부터는 중산층 등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단지 내에서 양로·탁아·가사노동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치세·계약세·방산세·성진토지사용세를 완전히 면제하였으며,⁶⁷⁾ 개인사업자 등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자가생산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하는 재화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하고 기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때에도 관련 기부금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공익기부 관련 조세부담도 경감하였다.⁶⁸⁾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증치세 기본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기존 10%의 저세율을 적용받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9%로 인하)하였으며,⁶⁹⁾ 월 매출액 1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치세 부담을 완전 면제하도록 증치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⁷⁰⁾

이와 같은 중산층 등에 대한 증치세 조세감면은 2020년 Covid19 기간 중 계속하여 연장 또는 확대 시행되었는데, 2023년에도 중산층 등에 대한 증치세의 조세감면은 일몰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나,⁷¹⁾⁷²⁾ 금융기관에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소액대출 및 담보(재담보) 관련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⁷³⁾⁷⁴⁾

65) <關於進一步支持小微企業增值稅和營業稅政策的通知>(財稅[2014]71号)

66) http://www.baidu.com/link?url=4PoyTFm4bF0etbRqA9Rrr4344jLJb2tbWG5vuNkU5Jv6Db1ynY8X3CdOe9kqbcz-Uz9ZnLAgqHhpX7Fqgyq71_&wd=&eqid=a42389420000eef20000000459d6f68f0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된 “영개증(營改增)개혁”을 통한 감세규모는 2016년말 기준 약 1조 6100억 위안(약 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67) <關於養老、托育、家政等社區家庭服務業稅費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公告[2019]76号)

68) <關於扶貧貨物捐贈免徵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務院扶貧辦公公告[2019]55号), <關於企業扶貧捐贈所得稅稅前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務院扶貧辦公公告[2019]49号)

69) <關於深化增值稅改革有關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海關總署公告[2019]39号)

70) <關於小規模納稅人免徵增值稅政策有關征管問題的公告>(國家稅務總局公告[2019]4号), <關於實施小微企業普惠性稅收減免政策的通知>(財稅[2019]13号). 이와 함께 <關於增值稅小規模納稅人減免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9号)를 통하여 3%의 세율로 간이과세하던 소규모납세의무자의 적용세율도 1%로 인하하였다.

71) <關於延續實施醫療服務免徵增值稅等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68号)

72) <關於繼續實施公共租賃住房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33号)

73) <關於支持小微企業融資有關稅收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3号)

74) <關於延續執行農戶、小微企業和个体工商户融資担保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8号)

한편 최근 중국 정부는 이른바 신시대의 새로운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균형·불충분’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농(농업·농촌·농민)’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우정저축은행 포함)의 농가대출 관련 증치세 과세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⁷⁵⁾ 금융기관이나 소액대출회사에서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이자수취액의 90%로 감액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⁶⁾ 이밖에도 농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 ‘농촌식수안전공정(이하, 식수공정이라 함)’에 참여하는 기업 등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식수공정 관련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계약세와 인지세를 면제하고, 식수공정 사업과 관련 있는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와 안전한 식수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증치세도 면제하였으며, 식수공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면3감(3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의 조세우대를 적용하도록 기업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⁷⁷⁾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적격 난방공급기업에 대하여는 난방공급 관련 증치세와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를 면제하였으며,⁷⁸⁾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적격 개인사업자에게 증치세·성시유호건설세·교육비부가·개인소득세 등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3년을 기한으로 매년 20000위안을 공제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도 경감하였다.⁷⁹⁾

나. 기술혁신 관련 세제개편

중국 정부는 또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이테크기업과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감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적격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는 ‘2면3감(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2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12.5%의 특례세율 적용)’의 조세우대를 신설하였으며,⁸⁰⁾ 반도체 기업이 지출한 연구

75) <關於延續實施金融機構農戶貸款利息收入免徵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稅務總局公告[2023]67号), <關於延續實施中國郵政儲蓄銀行三農金融事業部涉農貸款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稅務總局公告[2023]66号)

76) <關於延續實施支持農村金融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5号), <關於延續實施小額貸款公司有關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4号)

77) <關於繼續實行農村飲水安全工程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7号), <關於繼續實施農村飲水安全工程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8号)

78) <關於延續實施供熱企業有關稅收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6号)

79) <關於進一步支持重點群體創業就業有關稅收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人力資源社會保障部 農業農村部公告[2023]15号)

80) <關於進一步鼓勵軟件產業和集成電路產業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2]27号), <關於軟件和集成電路產業企業所得稅優惠政策有關問題的通知>(財稅[2016]49号), <關於集成電路設計和軟件產業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8号), <關於集成電路設計企業和軟件企業 2019 年度

개발비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실제 지출액의 120%(무형자산을 창출한 경우 220%)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반도체 기업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⁸¹⁾

또한 2023년부터는 기존에 혁신기술형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연구개발비 추가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① 제조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으로 아직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하여 당기의 손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실제 지출액의 100%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제조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통해 무형자산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 실제 지출한 무형자산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을⁸²⁾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다.⁸³⁾ 다만 국외 위탁연구개발비는 실제 지출한 국외 위탁연구개발비용의 80%를 위탁자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되, 이처럼 80%의 범위 내에서 국외 위탁연구개발비에 산입된 연구개발비가 국내에서 지출한 적격 연구개발비의 2/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국외 위탁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⁸⁴⁾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신규로 매입한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기기와 설비 중 그 단위가격이 5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당해 기기와 설비의 매입가액을 모두 당기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위가격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관련 기기 또는 설비의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⁸⁵⁾⁸⁶⁾

企業所得稅匯算清繳適用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0]29号), <關於促進集成電路產業和軟件產業高質量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0]45号)

- 81) <關於提高集成電路和工業母機企業研發費用加計扣除比例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家發展改革委 工業和信息化部公告[2023]44号)
- 82) <關於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歸集範圍有關問題的公告>(稅務總局公告[2017]40号),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1]13号)
- 83)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7号)
- 84) <關於企業委托境外研究開發費用稅前加計扣除有關政策問題的通知>(財稅[2018]64号)
- 85) <關於完善固定資產加速折舊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4]75号), <關於進一步完善固定資產加速折舊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5]106号), <關於設備 器具扣除有關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8]54号),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1]13号)
- 86) 유호림(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과격적인 조세특례조치인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유호림(2020),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윤성만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기타의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취업 및 고용효과 등에 있어서 정책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조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 대해 높은 공제율 또는 완화된 환급요건 등을 제공하는 등 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윤성만 등(2019),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세정책학회 연구보고서).

〈표 1〉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기의 주요 감세정책 요약

	시기	내용	성격
증치세법	2014	증치세 과세점 제고(월 매출액 20000위안 → 30000위안)	감세
	2016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완료	실질적 감세
	2019	양로·탁아·가사 서비스 관련 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	감세
		기본세율 인하(16% → 13%), 경감세율 인하(10% → 9%)	감세
		소규모납세자 과세점 인상(월 매출액 3만위안 → 10만 위안)	감세
	2023	간이과세자 적용세율 인하(3% → 1%)	감세
		의료용역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감세
		개인사업자 등 소액대출과 보험서비스 등에 대한 증치세 면제	감세
		농민 등에 대한 소액대출 등에 대한 증치세 면제	감세
		식수공정 관련 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	감세
		국산 설비 관련 증치세 즉시 환급	실질적 감세
		하이테크기업의 증치세 매입세액 5% 추가공제	감세
개인소득세법	2018	개인소득세 과세점 제고(3500위안 → 5000위안)	감세
		자녀공제(매월 1인 1000위안)·교육비공제(매월 400위안) 신설	감세
		의료비공제(15000위안 초과시 80000위안) 신설	감세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240개월 한도 매월 1000위안) 신설	감세
		주택임차료공제(임차료 기준 매월 1500위안) 신설	감세
		부모공제(60세 이상 매월 2000위안) 신설	감세
기업소득세법	2022	영아 양육 추가공제(3세 이하 1인 매월 1000위안)	감세
	2023	영아 양육 추가공제 인상(1000위안 → 2000위안)	감세
		자녀공제 인상(1000위안 → 2000위안)	감세
		부모공제 인상(2000위안 → 3000위안)	감세
		개인사업자 세액감면 50%(당해 연도 소득금액 200만 위안 이하)	감세
	2016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세
		반도체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최대 200%)	감세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추가공제(최대 80%)	감세
기업소득세법	2016	하이테크 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 기한 연장(5년 → 10년)	실질적 감세
	2018	연구개발 등 관련 설비 가속상각(500만 위안 한도)	실질적 감세
	2022	소형영세기업 과세대상소득금액 50% 감액 과세(100만위안 한도)	감세
		소형영세기업 과세대상소득금액 25% 감액 과세(100만위안~300만위안)	감세
	2023	반도체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비율 인상(200% → 220%)	감세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적용 범위 확대(반도체기업 등 → 모든 기업)	감세
		금융기관의 농촌 관련 소액대출 이자수입에 대한 10% 감액과세	감세
		식수공정 관련 기업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세

* 출처 : 저자 직접 작성

한편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기업 등에 대한 증치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선진형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5%를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⁸⁷⁾ 연구개발기구의 국산 설비 관련 증치세 매입세액은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이테크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⁸⁸⁾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에서 중점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⁸⁹⁾ 직전 5개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미보전 결손금을 최장 10년까지 이월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⁰⁾ 한편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대하여도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창업기업 및 소형영세기업의 경우 20%의 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 소형영세기업으로서 과세대상소득금액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50%로 감액하여 계산하여 20%의 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100만 위안 초과 300만 위안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소득금액을 25%로 감액하여 계산한 후 20%의 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⁹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의 세제개혁은 언제나 ‘정책제시 → 시범시행 → 전국확대’라는 절차적 특성과 더불어 약 10여 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초기였던 1980년대의 ‘이개세(利改稅)’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시기였던 2000년대의 ‘영개증(營改增)’개혁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내세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과 ‘공동부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강력한 분배 기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진핑 집권 3기 이후의 세제개혁 또한 최소 10여 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세제개혁은 크게 ① 소득분배 강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감면 ②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삼농 관련 조세 감면 ③ 기술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 등으로 구분되며 무엇보다도 최근 중국의 과세당국이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하여 지대추구자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과

87) <關於先進製造業企業增值稅加計抵減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43号), <關於修訂印發<高新技術企業認定管理辦法>的通知>(國科發火[2016]32号)

88) <關於研發機構採購設備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商務部 稅務總局公告[2023]41号)

89) <關於高新技術企業境外所得適用稅率及稅收抵免問題的通知>(財稅[2011]47号)

90) <關於延長高新技術企業和科技型中小企業虧損結轉年限的通知>(財稅[2018]76号)

91) <關於進一步實施小微企業所得稅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2]13号), <關於小型微利企業所得稅優惠政策征管問題的公告>(國家稅務總局公告[2022]5号)

거에는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조세우대를 부여하였지만 최근에는 생산적 투자가 아닌 지대추구적 투자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비록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개발 등 지대추구적 투자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농촌과 농민·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경제주체와 소득계층에 대하여 감세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바,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중국의 ‘불균형·불충분 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및 그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혹은 이념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중국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 및 핵심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때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진핑 집권 3기 기간 중에는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시기에 새로운 ‘주요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균형·불충분 발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국과 교역하거나 투자를 단행함에 앞서 중국 중앙 공산당의 ‘불균형·불충분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방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과 교역관계에 있거나 중국 현지에서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조세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조세제도와는 상이한 논리 구조를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조세를 조세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이 기본적으로 대등한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중국에서 조세는 공유이익의 증대와 분배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 종속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론적 차이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전략(또는 절세전략)이 중국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 투자기업들은 반드시 중국의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조세전략이자 절세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전술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조세를 일종의 ‘위탁-대리 관계’에 근거한 공유이익(또는 잉

여자원) 분배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수징수관리법'이 조세법의 모범으로 기능하며 매우 국고주의적 해석론을 보인다. 즉 중국의 과세당국과 사법기관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in dubio contra fisco'가 아니라 'in dubio pro fisco'의 시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과세당국과 세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심절차이든 행정소송이든 납세의무자인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이 새로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또는 철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tax-risk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사전적 조세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대륙법 국가로서 최고 규범인 헌법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정한 법률 및 국무원에서 수권하여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의 법원성이 인정되는바, 수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법령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행정부에서 유권해석한 규범성 문건 또는 국무원 또는 중국 중앙 공산당에서 반포한 각종 결의문이나 의견에 대한 법원성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규범성 문건은 대체로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제정·반포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권리보다는 과세행정을 위한 의무나 규제성 규정을 많이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반포한 규범성 문건의 규정이 법률이나 법령을 묵시적으로 기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 중국의 시진핑은 집권 3기가 확정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란 21세기 이후 중국의 모순 관계가 '인민의 아름답고 좋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공평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하, '신(新)모순 관계')'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新)모순 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면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향후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이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① 2035년까지 기본적 공공서비스(필수재)의 평등을 실현하고, ② 2050년까지는 공동번영을 기본적으로 달성하며, ③ 주민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격차를 합리적인 범위 축소하는 것을 단계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3기에는 신시대의 정책목표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소득분배 강화 ② 자산배분 조정 ③ 자본팽창 억제 ④ 교육평등 실현 ⑤ 도농간 균형 발전 등 시장화된 '자본의 재공유화'를 위한 개혁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중산층과 서민·농촌과 농민·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요컨대 중국 정부는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각 경제주체와 소득계층에 대하여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조세정책은 비록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혹은 이념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중산층과 서민 및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또한 향후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때에 Covid19 및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와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와 조세지출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중소(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감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시진핑 정권은 집권 3기 기간 중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중국의 ‘불균형·불충분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이 중국 중앙 공산당의 거시적 전략 목표에 따라 결정되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과 교역하거나 중국 현지에 투자를 단행함에 앞서 중국 중앙 공산당의 ‘불균형·불충분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방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과 교역관계에 있거나 중국 현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조세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조세제도와는 상이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중국에서 조세는 공유이익의 증대와 분배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 종속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전략이 중국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중국에서는 조세를 일종의 ‘위탁-대리 관계에 근거한 공유이익(또는 잉여자원) 분배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또는 철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tax-risk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사전적 조세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나 재정부 등에서 유권해석한 규범성 문건이나 국무원 또는 중국 중앙 공산당에서 반포한 각종 결의문이나 의견에 대한 법원성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규범성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반포한 규범성 문건의 규정 이 법률이나 법령을 묵시적으로 기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호림. 2007. “중국 신(新)기업소득세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조세연구 제7집 : 447-457.
- 유호림. 2020.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 253-289.
- 윤성만 등. 2019.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세정책학회 연구보고서.
- 이상덕. 2008. “중국의 새 발전전략, “科學發展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6-51.
- 이택후. 1999. 『중국사상사론(하)』, 안휘문예출판사 : 997.
- 주장환. 2018.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 192.
- Yoo Ho Lim & Yoon Sung Man. 2015. “Trends and Prospects of Tax Reforms in China”, *Risk governance & control : financial markets & institutions / Volume 5, Issue 1, 2015*.
- 毛澤東(第1卷), 1991 : 320.
- 毛澤東(第2卷), 1991 : 675.
- 鄧小平. 1995. 『鄧小平文選』第三卷. 中國北京 : 人民出版社 : 117, 373.
- 鄧小平. 1995. 『鄧小平文選』第一版 ; 第二卷. 中國北京 : 人民出版社 : 356.
- 樣瑞龍、陳秀山、張宇. 1998. 『社會注意經濟理論』. 中國北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4-14.
- 國家教委社科司組編. 1998. 『中國革命史』. 中國北京 : 高等教育出版社 : 173-178.
- 胡鞍鋼. 2007. 『中國崛起之路』. 中國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 372-375.
- 劉虎林. 2007. 『中國合併納稅制度與上市公司所得稅負擔研究』, 中國經濟科學出版社.
- 閔坤&于樹一. 2011. 論全球金融危機下的中國結構性減稅. 稅務研究(2011年第1期) : 13.
- 朱青. 2012. 對我國稅負問題的思考. 財貿經濟(2012年第12期) : 9.
- 叢明. 2012. 關於實施結構性減稅政策若干問題的分析. 創新(2012年第1期) : 7.
- 花磊. 2013. 理性看待我國當前宏觀稅負水平及結構性減稅. 財政稅收(2013年第5期) : 63.
- 馬衍偉. 2013. 結構性減稅政策的理論分析和政策探討. 中國財政(2013年第3期) : 22.
- 何毅亭, 『實現中國夢是新時代中國共產黨人的歷史使命』(<http://www.wxyjs.org.cn> 2017)
- 習近平. 2021a. “共同富裕是社會主義的本質要求,是中國式現代化的重要特征.” 『求是網』(2021.9.5)
- 習近平. 2021b. “扎實推動共同富裕.” 『求是網』(2021.10.17.).
-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的決定>(主席令第85号)
-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國務院令第512号)
-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的決定>(國務院令第452号)
-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國務院令第538号)
-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暫行條例實施細則的決定>(財政部令第65号)
- <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實施細則的決定>(財政部令第65号)

- <關於印發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的通知>(國稅發[2005]205号)
- <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中發[2006]1号)
- <全國實施增值稅轉型改革若干問題的通知>(財稅[2008] 170号)
- <關於印發特別納稅調整實施辦法(試行)的通知>(國稅發[2009]2号)
- <中國清潔發展機制基金及清潔發展機制項目實施企業有關企業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財稅[2009]30号)
- <國務院關於進一步促進中小企業發展的若干意見>(國發[2009]36号)
- <關於技術先進型服務企業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財稅[2009] 63号)
- <關於高新技術企業境外所得適用稅率及稅收抵免問題的通知>(財稅[2011]47号)
- <關於進一步鼓勵軟件產業和集成電路產業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2]27号)
- <關於金融支持小微企業發展的實施意見>, 國務院辦公廳, 2013.08.13.
- <關於進一步支持小微企業增值稅和營業稅政策的通知>(財稅[2014]71号)
- <關於完善固定資產加速折舊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4]75号)
- <關於進一步完善固定資產加速折舊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5]106号)
- <關於修訂印發〈高新技術企業認定管理辦法〉的通知>(國科發火[2016]32号)
- <關於軟件和集成電路產業企業所得稅優惠政策有關問題的通知>(財稅[2016]49号)
- <關於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歸集範圍有關問題的公告>(稅務總局公告[2017]40号)
- <關於設備 器具扣除有關企業所得稅政策的通知>(財稅[2018]54号)
- <關於企業委托境外研究開發費用稅前加計扣除有關政策問題的通知>(財稅[2018]64号)
- <關於延長高新技術企業和科技型中小企業虧損結轉年限的通知>(財稅[2018]76号)
- <關於修改個人所得稅法的決定>(十三屆全國人大常委會第五次會議, 2018.08.31.)
- <關於提高個人所得稅有關專項附加扣除標準的通知>(國發[2023]13号)
- <關於印發個人所得稅專項附加扣除暫行辦法的通知>(國發[2018]41号)
- <關於優化生育政策促進人口長期均衡發展的決定>
- <關於小規模納稅人免徵增值稅政策有關征管問題的公告>(國家稅務總局公告[2019]4号)
- <關於實施小微企業普惠性稅收減免政策的通知>(財稅[2019]13号)
- <關於深化增值稅改革有關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海關總署公告[2019]39号)
- <關於企業扶貧捐贈所得稅稅前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務院扶貧辦公公告[2019]49号)
- <關於扶貧貨物捐贈免徵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務院扶貧辦公公告[2019]55号)
- <關於公共租賃住房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1号)
- <關於繼續實行農村飲水安全工程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7号)
- <關於集成電路設計和軟件產業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19]68号)
- <關於集成電路設計企業和軟件企業 2019 年度企業所得稅匯算清繳適用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0]29号)

- <關於養老、托育、家政等社區家庭服務業稅費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公告[2019]76号)
- <關於小型微利企業所得稅優惠政策征管問題的公告>(國家稅務總局公告[2022]5号)
- <關於進一步實施小微企業所得稅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2]13号)
-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7号)
- <關於設立3歲以下嬰幼兒照護個人所得稅專項附加扣除的通知>(國發[2022]8号)
- <關於促進集成電路產業和軟件產業高質量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0]45号)
-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1]13号)
- <關於進一步完善研發費用稅前加計扣除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1]13号)
- <關於進一步支持小微企業和個體工商戶發展有關稅費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2号)
- <關於增值稅小規模納稅人減免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19号)
- <關於延續執行農戶、小微企業和個體工商戶融資擔保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稅務總局公告[2023]18号)
- <關於進一步支持重點群體創業就業有關稅收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人力資源社會保障部 農業農村部公告[2023]15号)
- <關於延續實施支持居民換購住房有關個人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住房城鄉建設部公告[2023]28号)
- <關於提高集成電路和工業母機企業研發費用加計扣除比例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 國家發展改革委 工業和信息化部公告[2023]44号)
- <關於繼續實施公共租賃住房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33号)
- <關於研發機構採購設備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商務部 稅務總局公告[2023]41号)
- <關於先進製造業企業增值稅加計抵減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43号)
- <關於延續實施小額貸款公司有關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4号)
- <關於延續實施支持農村金融發展企業所得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5号)
- <關於延續實施供熱企業有關稅收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6号)
- <關於繼續實施農村飲水安全工程稅收優惠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58号)
- <關於延續實施中國郵政儲蓄銀行三農金融事業部涉農貸款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稅務總局公告[2023]66号)
- <關於延續實施金融機構農戶貸款利息收入免徵增值稅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67号)
- <關於延續實施醫療服務免徵增值稅等政策的公告>(財政部 稅務總局公告[2023]68号)
- <http://dangshi.people.com.cn/n/2012/1119/c234123-19618241.html>
- <http://baidu.com> 中央網新聞 2018.5.4.

Reflection and Outlook on China's Tax Reforms in the Xi Jinping Era

Yoo Ho Lim*

〈Abstract〉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China's tax reforms always follow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posal → pilot implementation → nationwide expansion' and typically span over a decade. For instance, the '利改税' reform in the 1980s at the onse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he '营改增' reform during its development phase in the 2000s. Thus,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 tax reforms in Xi Jinping's third term, based on his 'New Era Chinese-style socialism' and 'common prosperity', will also unfold over at least ten years, focusing on establishing a strong redistribution mechanism centered around personal income tax. Xi Jinping's third term tax reforms in China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areas : ① tax reductions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② tax reductions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o promote balanced urban-rural development, and ③ tax incentives to encourag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China's tax authorities have been intensifying tax management on rent-seekers to realize 'common prosperity'. Additionally, while foreign investors were previously granted significant tax privileges to attract capital and technology, there is now a trend of tightening tax base management for non-productive, rent-seeking investments. Even foreign investors involv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other rent-seeking activities may face increased tax burdens in the long run.

However, massive tax cut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middle class, the poor, rural areas, far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Especially during the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Covid-19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the scope of tax reductions for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income groups is being expanded.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continue expanding tax incentives for SMEs, startups, and high-tech companies holding core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However, industries identified by Xi Jinping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s contributing to China's 'uneven and

* Professor,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Kangnam University, liuhulin@naver.com

inadequate development' are expected to remain regulated in the future. This tax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offers insights in light of the economic hardships faced by our country's middle class, the poor, and companies holding core technologies amid the Covid-19 pandemic,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sultant shifts in the global value chain.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ur country and China in terms of political systems and market economy theories (or ideologies), China is implementing large-scale tax cuts focused on the middle class and the poor, while our country appears to lack adequate policy consideration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middle class, the poor, SMEs, and venture compani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se aspects when our country formulates and implements tax policies. In this study, based on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so-called 'Chinese-styl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e evolution of China's socialist theoretical system was examined. Then, Xi Jinping's 'New Era Chinese-style socialist thought' and his policy goal of 'common prosperity' were analyzed to review the main conten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cent tax reforms in China and to forecast the future direction of China's tax reform.

<Key words> China, Xi Jinping, socialism, tax cuts, tax reform